문서번호	감사실-1825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3.31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
협 조				

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추진계획

2016.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| 감사실

부패행위자 제재현황 공개 추진계획

부패행위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의 징계 외에 제재현황을 과감히 공개(명예형·名譽刑)하여 일벌백계를 통한 직원비리의 근절 및 징계실효성을 제고

Ⅰ 추진개요

☐ 관련근거

○ **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27조의 2 (2014.11.15)**

-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기준설정

○ **2015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지표 의무사항 (2015.4.2.)**

- 내·외부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(배점 10점)

※ 서울시 전투자기관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홈페이지 공개 시행

☐ 추진경위

○ **'13년 이후 부패행위자 지속 발생(4명)** ←'13년 2명/'14년 1명/'15년 1명

✓ **부패행위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으로 재무적 손실 : 67억원**

- 경영평가 가등급 → 감점으로 다등급(성과급 280%→ 145%↓)

✓ **부패행위에 따른 권익위 청렴평가 감점으로 공단 청렴도 추락**

- '14년 2등급 → 감점으로 4등급, '15년 3등급→ 감점으로 4등급

✓ **부패행위에 따른 시의회 질책 및 언론 비판보도 등으로 신뢰도 훼손**

- 3년간 부패비위행위 의원 질의 및 자료요구 : 22건
- 부패관련 부정적 언론보도 : 61건

○ **반면,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인사규정상 일정기간 승진·승급제한에 그쳐 징계의 실효성 저하**

⇒ **부패행위 고리 근절을 위하여 부패행위자에게 인사규정상의 징계 뿐만 아니라 징계 등 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생활의 낙인효과가 필요**

Ⅱ 개선추진방안

□ 공개대상 : 부패행위 등으로 당연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

○ **부패행위 등**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 참고

⇒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입찰 및 인사비리, 성폭행 등 포함

※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

○ **당연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**

징계처분의 종류	공개 대상	비 고
부패행위 등	징계(**견책**)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	징계확정후 2주 이내 공개
일반비위 등	**정직**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	

[개선사항]

⇒ **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입찰비리·성폭행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일반비위사항이라도 중징계사항은 과감히 공개**

□ 공개내용 및 방법

○ 내용 :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, 금품·향응 수수현황, 징계처분결과 등

※ 게재양식 첨부 참조

○ 방법 : 공단 그룹웨어 게시판 (내부) 및 홈페이지 게시판 (외부)



내부 게시판 (서울시설공단)



타기관 (부산광역시) 공개 현황

[개선사항] **게시시기 및 게시양식 등 구체화**

Ⅲ 행정사항

☐ 2015 하반기 공개대상자 1명 공개

○ 공단 그룹웨어 게시판 (내부) 및 홈페이지 게시판 (외부)

○ 향후 공개대상자 확정시 2주이내 공개이행 (청렴담당자)

☐ 청렴관련교육시 부패사례 구체적 교육

○ 신입사원 직무교육 및 부서별 청렴교육시 부패사례 특별교육 시행